

#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2월 27일, 김홍구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: 2025년 2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
(2025년 3월 12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김홍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제명과 인용 법령, 핵심 용어 정의, 명칭, 추진사업 등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, 인용 법령, 핵심 용어 정의, 명칭의 변경(제명, 안 제1~8조)
-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및 신설(안 제10조)
- 지능정보화 추진사업의 신설(안 제11조)
- 용어 및 명칭의 변경(안 제12~13조, 제18조, 제20조)

#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남정해)

##### 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# < 개정안 조문별 구성 현황 >

현 행(4장 21조)		개 정 안(4장 21조)
제명(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)	⇒	제명(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)
제1장 총칙	⇒	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	⇒	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	⇒	제2조(정의)
제3조(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	⇒	제3조(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	⇒	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	⇒	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제5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	⇒	제5조(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
제6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⇒	제6조(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제7조(지역정보화위원회)	⇒	제7조(지능정보화위원회)
제8조(위원회의 기능)	⇒	제8조(위원회의 기능)
제9조(회의 등)	⇒	제9조(회의 등)
제10조(정보화책임관)	⇒	제10조(지능정보화책임관)
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	⇒	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
제11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	⇒	제11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
제12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	⇒	제12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
제13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	⇒	제13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
제14조(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)	⇒	제14조(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)
제15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	⇒	제15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
제16조(행정정보의 제공)	⇒	제16조(행정정보의 제공)
제17조(정보화 교육)	⇒	제17조(정보화 교육)
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	⇒	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
제18조(정보문화의 창달)	⇒	제18조(정보문화의 창달)
제19조(정보격차의 해소)	⇒	제19조(정보격차의 해소)
제20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	⇒	제20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제21조(정보보호)	⇒	제21조(정보보호)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명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됨<sup>1)</sup>에 따라 “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”를 “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”로 변경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</u>	<u>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</u>

- 안 제1조(목적)는 인용 법률 명칭 변경 및 「전자정부법」을 추가한 것은 정보화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규정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<u>지역정보화</u>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 <u>국가정보화 기본법</u> 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<u>지능정보화</u> ----- ----- 「 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 」 및 「 <u>전자정부법</u> 」----- ----- -----.

- 안 제2조(정의)는 일부 조항 삭제, 용어 정비 및 「지능화정보법」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함으로써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규정함.

1)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44호, 2020. 6. 9., 전부개정]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정보”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<u>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정보화”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<u>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3. “지역정보화”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·주민 생활·산업·복지 등 분야별로 <u>정보통신기반을 구축·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4. “정보통신”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, 이에 관련되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는 기기(器機)·기술·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정보보호”란 정보의 수집, 가공, 저장, 검색, 송신,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, 변조,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·기술적 수단(이하 “정보보호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“정보문화”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, 가치관,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</u></p> <p>8. <u>“정보격차”란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<u>“정보통신망”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1. (현행 제6호와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2. (현행 제9호와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, 가공, 저장, 검색,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.</u></p> <p>11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3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</u></p>

- 안 제3조(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부터 안 제6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까지는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지능정보화”로 일괄 변경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<u>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</u>)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지역정보화</u>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<u>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</u>) ----- -----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<u>지역정보화</u>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지역정보화</u>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2장 <u>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</u></p> <p>제5조(<u>지역정보화 기본계획</u>의 수립) ①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의 효율적,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<u>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</u>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은 <u>국가정보화기본계획</u>을 고려하고 시·군의 <u>부문계획</u>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<u>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<u>지역정보화</u> 시책의 기본방향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장 <u>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</u></p> <p>제5조(<u>지능정보화 기본계획</u>의 수립) ① ----- <u>지능정보화</u>의 ----- ----- <u>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제7조에 따른 <u>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능정보화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지역정보화</u>의 목표와 전략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정보격차해소, <u>인터넷중독</u> 예방·해소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<u>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</u>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<u>지역정보화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매년 <u>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</u>(이하 “<u>시행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 <u>지능정보화</u>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지능정보서비스</u> <u>과의준</u> -----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<u>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</u>) ① ----- ----- --<u>지능정보화위원회</u>----- ----- <u>경상북도지능정보화</u> <u>시행계획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안 제7조(지역정보화위원회) 및 안 제8조(위원회의 기능)는 조문 제목 및 명칭을 “지역정보화위원회”를 “지능정보화위원회”로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지능정보화”로 일괄 변경하여 명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역정보화위원회) ① <u>지역 정보화 추진</u>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<u>지역정보화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7조(지능정보화위원회) ① <u>지능 정보화 추진</u>----- ----- ----- <u>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---</p>

- 안 제10조(정보화책임관)는 조문 제목 및 용어를 “정보화책임관”을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으로, “주관부서”를 “사업부서” 등으로 변경하고,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을 지능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책임관의 역할 강화 측면을 추가하여 규정함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	제10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--

현행	개정안
<p>는 <u>지역정보화 시책</u>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<u>지역정보화 사업</u>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<u>정보화책임관</u>”이라 한다)을 임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정보화책임관</u>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국장이 된다.</p> <p>③ <u>주관부서</u>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<u>정보화책임관</u>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정보화책임관</u>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1. <u>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</u></p> <p>2. <u>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</u></p> <p>3. <u>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</u></p> <p>4. <u>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</u></p>	<p>-- <u>지능정보화 시책</u>----- ----- <u>지능정보화 사업</u>----- ----- ----- “<u>지능정보화책임관</u>”----- -----.</p> <p>② <u>지능정보화책임관</u>----- -----.</p> <p>③ <u>사업부서</u>----- ----- ----- <u>정보화부서의 장</u>----- -----.</p> <p>④ <u>지능정보화책임관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, 지원 및 평가</u></p> <p>2. <u>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, 조정, 지원 및 평가</u></p> <p>3. <u>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·조정</u></p> <p>4. <u>지능정보기술</u>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·관리</u></p>

현행	개정안
7. <u>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</u>	7.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<u>정보 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</u>
8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<u>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</u>	8. <u>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</u>
<신설>	9. <u>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</u>
<신설>	10. 그 밖에 <u>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
- 안 제3장의 제목을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“지역정보화의 추진”을 “지능정보화의 추진”로 변경함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장 <u>지역정보화의 추진</u>	제3장 <u>지능정보화의 추진</u>

- 안 제11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지역정보화</u> 강사지원 및 <u>정보화 취약계층</u> 등 도민정보화 교육사업</p> <p>3.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<u>인터넷 중독</u> 예방사업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<u>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</u></p>	<p>제11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지능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지능정보화</u> ----- <u>정보취약계층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-----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</u> 및</p>



현행	개정안
<p>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.</p>
<p>제18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생략)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<u>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----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<u>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“웹표준”</u>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</u> -----.</p>

○ 안 부칙은 개정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에 대한 명칭 변경 등을 적절하게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·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

태계를 강화하는 한편,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법령 입안 기준과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표현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며, 기존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아울러,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지원과 지능정보사회 시책 총괄 등의 역할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정책 운영 기능을 강화한 점과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